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기록물분류기준표 단위업무 변경사항 제출 안내

1. 관련 근거

가. 행자부 국가기록원 「2015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나. 기록물관리규정 제19조 제3항

2. 기록물 생산 또는 접수 시 사용되는 부서별 단위업무와 관련, 2016년도에 사용될 기존 단위업무(붙임 1)에 대하여 변경(신설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서는 기록물 분류기준표 변경 신청서(붙임 2)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기록물분류기준표 단위업무 중 부서 고유업무 (붙임 1)

나. 참고자료: 부서별 사무분장표, 직제규정시행내규 [별표 7]의 업무분장

다. 작성방법

○ 변경 신청서 구분 작성

- 직제개정 또는 신규 업무 발생으로 단위업무 신설 필요 시 → (붙임

2)서식 "1. 단위업무를 신설하는 경우" 작성

- 기존 단위업무의 세분화 또는 명칭 일부 수정, 보존기간 등 수정 필요 시 → (붙임 2)서식 "2. 단위업무의 일부 항목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작성

○ 세부 작성방법: (붙임 2)서식 작성예시 참조

라. 제출기한: '15. 12. 11.(금)한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

마. 기타 유의사항

○ 단위업무별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생성하여 사용

○ 기록물철은 하나의 주제, 과제, 행사, 회의, 사안 등 적합한 업무단위로 생성

※ 기록물철 작성 예시(괄호 안은 보존기간)

구분	나쁜 예	좋은 예
단위업무명	기록관리 업무 (10년)	기록관리 업무 (10년)
기록물철명	⇒ 기록관리 업무 (10년)	⇒ 기록물 정리 (5년)
		⇒ 기록물 이관 (5년)
		⇒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10년)

붙임 1. 기록물분류기준표 단위업무(부서 고유업무) 1부.
2.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 신청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수신자 나1~나43, 다1~다43, 라1

과장 김한수

처장 12/08

안영권

협조자

시행 총무지원처-8451 (2015.12.08.)

접수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http://www.smrt.co.kr

전화 02-6311-2165 전송 02-6311-2080 / 1970479@smrt.co.kr / 부분공개

부패 '0'의 공기업!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인사 이권청탁 배격